



있다. 공영방송 KBS 역시 미녀들의 수다 리는 프로그램에서 루저발언' 이후에 방송의 소재 및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체심의 결과 상습적인 막말과 비속어 사용으로 3회 이상 지적된 출연자는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가운데 지상파방송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 대한 제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16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제재 건수의 증가는 이른바 '막말' 방송과 저품격 드라마에서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수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정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매년 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는 생각이다.

정부 심의기관과 방송사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

지난 호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속한 표현조차 수정조항 제1조' 아래 보호받는 미국의 경우조차도 특정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도 동시대의 사회통념이나 기준을 토대로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장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단기적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자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마다하지 않는 영국의 상업방송사인 ITV(Independent Television)조차도 어린이나 청소년의 시청 기능 여부에 따른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경계선을 의미하는 'Watershed'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즉,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은 9시 이후에 방영한다는 원칙 준수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만으로 저속한 프로그램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방송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일반 공중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불만사항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추세이다. 즉, FCC가 저속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일반시청자 혹은 대중으로부터 접수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내용을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막장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로 단순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제재나 방송사의 자정노력에만 오로지 의지하기 보다는 시청자들과 일반대중이 자